

교육중점 전임교원 공개채용 지침

제 정 : 2013. 10. 28. 교원인사위원회
개 정 : 2013. 11. 18. 교원인사위원회
개 정 : 2018. 10. 23. 교원인사위원회
개 정 : 2021. 03. 18. 직권 수정
개 정 : 2022. 10. 07. 교원인사위원회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영남대학교(이하“우리 대학교”라 한다) 『교육중점 전임교원 인사규정』 제12조 제2항에 의한 교육중점 전임교원(이하“교육중점교원”이라 한다) 공개채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채용절차) 교육중점교원의 신규임용은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확정
2. 공고 및 지원서류 접수
3. 서류심사
4. 전공적합성 및 연구실적심사
5. 교육능력심사
6. 면접심사

제3조(총원분야 및 인원 결정) ① 총장은 학교의 정책, 교원 수급 계획, 전임교원 확보율 등을 고려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원분야 및 인원을 결정한다.

② 총장은 결정된 총원분야 및 인원에 대하여 법인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지원자격) 교육중점교원의 신규채용 지원자격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8〉

1. 교육중점전임교원 인사규정 제14조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개정 2013.11.18〉
2. 접수 마감일 기준 교육 및 연구경력이 4년 이상인 박사학위 소지자(단, 예·체능계열 및 실기분야는 교육 및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개정 2018.10.23〉
3. 삭 제 〈2013.11.18〉

제5조(초빙공고) 총장은 채용분야, 채용인원, 지원자격,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 채용 지원 마감일 15일전에 공고한다.

제6조(지원서류 접수) ① 교육중점교원 공개채용 지원방식은 On-Line 입력에 의한 1차 지원과 서류심사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해당서류를 제출하는 2차 지원으로 구분한다.

② 1차 지원 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차 지원은 우리 대학교 교수채용사이트의 채용지원서 양식에 On-Line으로 입력한다. 〈개정 2018.10.23〉
2. 지원자의 교육·연구 및 경력 등의 실적은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사항만 입력하

여야 한다.

3. 연구실적은 대표실적과 함께 접수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게재한 실적을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3>

③ 2차 서류 제출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학력 및 성적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2. 경력 및 재직증명서(채용지원서상 증빙자료) <개정 2018.10.23>
3. 최종 학위 논문
4. 접수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게재된 연구실적물 <개정 2018.10.23>
5. 외국에서의 강의경력증명(외국에서 강의경력이 있는 자에 한하며 소속대학이 발행한 것으로서 강의과목명과 학점시간이 기재되어야 함)
6. 기타 채용지원서상 증빙자료

제7조(심사절차) 교육중점교원 신규채용 심사절차는 총장, 교과목 주관 학부(과)(이하 “학부(과)”라 한다)의 소속 대학(독립학부)장(이하 “대학장”이라 한다), 심사단계별 위원장의 책임 하에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1. 서류심사
2. 전공적합성 및 연구실적심사
3. 교육능력심사
4. 대학공채전문위원회 심의
5.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면접심사대상자 추천)
6. 면접심사
7. 교원인사위원회 심의(임용후보자 추천 등) <개정 2018.10.23>

제8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교육중점교원 신규채용 각 단계별 심사위원 구성 시 전공, 학술 활동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학부(과)에서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부(과) 교수회의를 거쳐 심사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이때 심사위원 추천을 위임할 수 없다.

- ② 서류심사위원회는 3명~5명의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학부(과) 교수회의를 거쳐 해당 대학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한다.
- ③ 전공적합성 및 연구실적심사위원회는 교내·외 해당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교원이나 전문가 중에서 5명~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전공적합성 및 연구실적심사위원회는 1/3 이상을 외부 심사위원(타 대학 교원 또는 타 기관의 관련 전문가)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3>
- ⑤ 전공적합성 및 연구실적심사위원회의 교내심사위원(장)은 학부(과) 교수회의를 거쳐 해당 대학장이, 외부 심사위원은 인사관리처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위촉)한다. 다만, 외부 심사위원 추천 시 신설전공이나 기타 사유로 외부 심사위원 추천이 어려울 경우 해당 대학장 또는 학부(과)장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10.23.,2021.03.18.>
- ⑥ 교육능력심사위원회는 5명 이상의 교내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학부(과) 교수회의를 거쳐 해당 대학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한다.
- ⑦ 대학공채전문위원회는 대학장이 임명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학장이 위원장이 된다.

- ⑧ 면접심사위원회는 총장, 교육혁신부총장, 인사관리처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03.18.>
- ⑨ 전공적합성 및 연구실적심사와 교육능력심사위원 추천 시 지원자와의 관계(석·박사 학위 지도교수 및 논문심사위원장, 친인척)로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은 해당 학부(과) 교수회의의 의결을 거쳐 제척하여야 한다.
- ⑩ 총장은 공채 진행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각 단계별 위원회의 위원(장)을 직접 임명(위촉)하여 공채를 진행할 수 있다.

제9조(심사위원의 책무) ① 각 심사위원장은 채용분야별로 마련된 심사지침 및 심사절차에 따라 모든 사항을 주관하여야 한다.

- ② 각 심사위원은 심사를 위촉받은 항목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지원자별 제출 자료를 검토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평가를 하여야 하며 평가의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 ③ 전공적합성 및 연구실적심사위원은 지원자가 작성한 채용지원서의 내용과 실제 연구실적물의 내용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 ④ 교육능력심사위원장은 교육능력심사를 주관하고 심사 대상자에게 심사일정 및 심사방법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서류심사위원, 전공적합성 및 연구실적심사위원, 교육능력심사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하여 별표 8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서류심사) ① 서류심사는 별표 1, 별표 2의 심사기준에 따른다.

- ② 서류심사는 이 지침 제6조 2항에 의하여 지원자가 작성·탑재한 실적물을 대상으로 연구실적물의 양, 대표 연구실적물의 질적 수준, 학력 및 경력의 우수성, 채용분야와의 적합도에 대하여 심사한다. <개정 2018.10.23>
- ③ 서류심사 결과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전공적합성 및 연구실적심사 대상자로 선발한다. 다만 응모자가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하인 경우 5배수 이내로 선발하며, 서류심사를 생략한다. <개정 2018.10.23>
- ④ 전공적합성 및 연구실적심사 대상자 선발 범위 안의 최하위 득점자가 동점일 경우에는 동점자 전원을 전공적합성 및 연구실적심사 대상자로 선발한다.
- ⑤ 서류심사 합격자는 교육중점교원 채용지원서에 명시한 각종 서류 및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서류심사 점수는 최종 누적점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1조(전공적합성 및 연구실적심사) ① 전공적합성 심사는 학력과 채용전공분야, 연구실적물과 총원분야와의 일치 정도를 심사한다.

- ② 전공적합성 심사 결과는 “적합”, “부적합”으로 판정하며, 심사위원은 별표 3의 심사기준에 따른다.
- ③ 심사위원 1/2 이상이 “적합” 판정을 한 경우 “적합”으로 한다. <개정 2018.10.23>
- ④ 전공적합성 심사 결과 “부적합”으로 심사위원이 판정한 경우라도 연구실적심사는 실시하여야 한다.
- ⑤ 연구실적심사는 연구실적물을 대상으로 연구실적물의 양, 대표연구실적물의 질적 수준

등을 심사하되 별표 4, 별표 5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2.10.07.>

- ⑥ 연구실적물 접수 후 최초지원서 입력이 오입력으로 밝혀져 심사에 중대한 문제를 야기한 지원자는 불합격 처리하고, 불합격 처리된 인원은 보충하지 않는다.
- ⑦ 전공적합성 및 연구실적심사 결과의 합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 3배수의 교육능력심사대상자를 선발한다. 다만, 심사대상자가 3배수 이하인 경우 3배수 이내로 한다. <개정 2018.10.23>
- ⑧ 교육능력심사대상자의 최하위 득점자가 동점일 경우에는 동점자 전원을 교육능력심사대상자로 선발한다. <개정 2018.10.23>

제12조(교육능력심사) ① 교육능력심사는 별표 6의 심사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10.23>

- ② 교육능력심사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점수배점) 전공적합성 및 연구실적심사와 교육능력심사의 점수배점은 아래와 같다.

구분	전공적합성 및 연구실적심사		교육능력심사	합계
점수배점	적합, 부적합	50점	50점	100점

제14조(심사결과 이의 신청) 교육중점교원 공채과정 중 서류심사, 전공적합성 및 연구실적심사, 교육능력심사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교원은 대학공채전문위원회 심의 전까지 구체적 사실(의견서 등)을 명기하여 대학공채전문위원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0.23>

제15조(대학공채전문위원회 심의) ① 대학공채전문위원회는 학부(과)로부터 제출된 심사결과와 이의신청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후, 채용예정인원 2배수의 면접심사대상자를 교원인사위원회에 추천한다.

- ② 대학공채전문위원회 심의결과 학부(과)에서 진행된 심사내용과 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에 재심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16조(면접심사대상자 추천) 교원인사위원회는 교육중점교원 공개채용 심사단계별 심사결과를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채용예정인원 2배수 이내를 면접심사대상자로 추천한다. 다만, 심사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면접심사대상자를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면접심사) 면접심사위원은 면접심사 결과를 별표 7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18조(임용 후보자 추천) ① 교원인사위원회는 면접심사를 완료한 임용후보자를 대상으로 이 지침 제4조에 따른 제반사항과 누적심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채용예정인원의 범위내에서 최종 임용후보자를 추천한다. 다만, 이 경우 해당 학부(과)장(필요한 경우 대학장도 참석요구 가능)을 출석시켜 임용후보자에 대한 대학, 학부(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8.10.23>

- ② 교원인사위원회는 심사서류 및 심사과정에서 명백한 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 대학에 재

심을 요구하거나, 외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가 임용의 유보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8.10.23>

1. 심사과정에서 불공정 문제가 제기된 경우
2. 추천된 지원자가 임용되었을 때 학부(과)의 균형적 발전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기타 우리 대학교 교육중점교원으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9조(임용예정자 결정) ①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가 심의하여 추천한 임용후보자를 대상으로 임용예정자로 결정한다. <개정 2018.10.23>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총장은 임용을 유보하거나 재심의를 명할 수 있다.

1. 추천된 임용후보자의 결격사유가 추후 발견되거나 발생한 경우 <개정 2018.10.23>
2. 심사과정에서 불공정 문제가 제기된 경우
3. 추천된 지원자가 임용되었을 때 학부(과)의 균형적 발전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기타 우리 대학교 교육중점교원으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0조(임용 취소) 신규 임용된 경우라도 추후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제21조(기밀 보안) 교육중점교원 채용 단계별 심사위원 및 교육중점교원 채용 업무와 관계된 자는 교원채용 과정에서 인지한 모든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지원자의 제출서류 처리) ① 지원자는 심사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자신이 제출한 서류 등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② 인사관리처장은 채용절차가 완료된 후, 해당 지원자에게 채용관련 서류 등을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1.03.18.>

부 칙(2013.10.2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3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1.1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2013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0.2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2018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3.18.)

제1조(직제규정 개정에 따른 직권수정) 이 개정 지침은 2021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0.0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2022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일반계열 서류심사 기준표

구 분	심사요소	배점	비 고	
연구실적물의 양	700점이상	20		
	650점이상 - 700점미만	19		
	600점이상 - 650점미만	18		
	550점이상 - 600점미만	17		
	500점이상 - 550점미만	16		
	450점이상 - 500점미만	15		
	400점이상 - 450점미만	14		
	350점이상 - 400점미만	13		
	300점이상 - 350점미만	12		
	250점이상 - 300점미만	11		
	200점이상 - 250점미만	10		
	150점이상 - 200점미만	9		
	100점이상 - 150점미만	8		
	100점미만	0		
대표 연구실적물의 질적수준	논문(대표실적) 게재 국제저명학술지의 IF(Impact Factor)의 분야별 상위 순위	상위 20% 이내	10	주저자는 해당점수의 100%산정, 공동저자는 해당점수의 20%산정
		상위 20% 초과 ~ 30% 이내	9	
		상위 30% 초과 ~ 40% 이내	8	
		상위 40% 초과 ~ 50% 이내	7	
		상위 50% 초과 ~ 60% 이내	6	
		상위 60% 초과 ~ 70% 이내	5	
		상위 70% 초과 ~ 80% 이내	4	
		상위 80% 초과	3	
	대표 연구실적물의 우수성	A&HCI 게재논문	7	심사의견
		A	10	
		B	8	
		C	6	
		D	4	
		E	2	
학력 및 경력의 우수성	A	10		
	B	8		
	C	6		
	D	4		
	E	2		
채용분야와의 적합도	A	10		
	B	8		
	C	6		
	D	4		
	E	2		
총 점		60		

[서류심사대상 연구실적 인정기준 및 점수산정방법]

1. 서류심사 대상 연구실적

- 최근 3년 이내 게재(발표)한 연구실적을 대상으로 함.

다만, 박사학위논문은 발표년도와 상관없이 대표 연구실적물의 질적수준 심사대상이 됨.

2. 연구실적물의 양 산정방법

- 연구실적물의 양 산정방법은 이 지침 [별표 4]의 2항, 3항, 4항을 따름.

3. 대표 연구실적물의 질적수준 심사

- 대표 연구실적물의 질적수준 심사는 박사학위논문과 1편 이내의 대표실적을 대상으로 함.

가. 논문 게재 국제저명학술지(SSCI, SCI, A&HCI, SCI-E)의 IF(Impact Factor)의 분야별 상위 순위

- 논문 게재 국제저명학술지의 IF의 분야별 상위 순위는 점수마감일 기준 최근 발표된 JCR 기준으로 함.
- A&HCI 등재학술지 게재 대표연구실적물 IF의 분야별 상위 순위 점수는 7점으로 함.
- 논문 게재 국제저명학술지의 IF의 분야별 상위 순위 점수 계산 시,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는 해당점수의 100%로 산정하고, 공동저자는 해당점수의 20%로 산정함.
- 대표 연구실적물이 국제저명학술지 게재 논문이 아닌 경우에는 논문 게재 국제저명학술지의 IF의 분야별 상위 순위 점수는 0점으로 함.

나. 대표 연구실적물의 우수성

- 대표 연구실적물의 우수성 심사는 박사학위논문과 1편 이내의 대표실적을 대상으로 심사하며, 심사 시 게재지의 권위와 질적수준, 발전가능성, 실적물의 창의성·학문적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괄 심사함.

4. 학력 및 경력의 우수성(학위수여고, 경력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심사)

5. 채용분야와의 적합도(교육, 연구, 산학협력 분야 전공 일치도 등을 고려하여 심사)

6. 점수산정법

- ① 연구실적물의 양 심사점수는 심사위원의 점수를 합산 평균하여 산출하되,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함.
- ② 대표 연구실적물의 질적수준과, 학력 및 경력의 우수성, 채용분야와의 적합도 심사점수는 심사위원의 점수를 합산 평균하여 산출하되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함.
- ③ 서류심사 총점은 상기 ①항과 ②항의 산정법에 의하여 계산한 점수를 합산함.

※ On-Line 입력에 의한 1차 지원 시, 1편 이내의 대표실적을 지정하고, 서류심사 중 대표 연구실적물의 질적수준 심사대상인 박사학위논문과 1편 이내의 대표실적은 반드시 전문(전체내용)을 탑재한다. 대표실적을 제외한 각 연구실적물의 경우에는 논문제목, 저자수, 역할(주저자 또는 공동저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논문의 첫 페이지(또는 논문 초록)를 탑재한다.

예·체능계열 및 실기분야 서류심사 기준표

구 분	심사요소	배점	의 견
연구실적물의 양 (일반계열실적 포함)	창작이나 작품발표 실적과 그 수준이 매우 탁월함	30	심사의견
	창작이나 작품발표 실적과 그 수준이 탁월함	27	
	창작이나 작품발표 실적과 그 수준이 우수함	24	
	창작이나 작품발표 실적과 그 수준이 보통임	21	
	창작이나 작품발표 실적과 그 수준이 다소 부족함	18	
	창작이나 작품발표 실적과 그 수준이 매우 부족함	15	
대표 연구실적물의 질적수준 (일반계열실적 포함)		30	심사의견
총 점		60	

1. 모집 전공과 관련된 최근 3년 이내 발표(게재)한 연구실적을 대상으로 함.
2. 연구실적물의 양 평가는 개별적인 실적을 대상으로 심사하지 아니하고 전체 실적물을 대상으로 일괄 심사함.
3. 대표 연구실적물의 질적수준 심사는 2편 이내의 대표실적을 대상으로 심사함.
 - 대표 연구실적물의 질적수준 심사 시 학위수여교의 수준, 경력, 발전가능성, 실적물의 창의성·예술성·학문적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괄 심사함.
4. 서류심사 점수는 아래의 방법으로 산정함.
 - ① 연구실적물의 양 심사점수는 심사위원의 점수를 합산 평균하여 산출하되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함.
 - ② 대표 연구실적물의 질적수준 심사점수는 심사위원의 점수를 합산 평균하여 산출하되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함.
 - ③ 서류심사 총점은 상기 ①항과 ②항의 산정법에 의하여 계산한 점수를 합산함.

※ On-Line 입력에 의한 1차 지원 시 예·체능계열 및 실기분야는 3편 이내의 대표실적을 지정하고, 서류심사 중 대표 연구실적물의 질적 수준 심사대상인 2편 이내의 대표실적은 전문(전체내용)을 탑재한다.

[별표 3]

전공적합성 심사 기준표

심사기준 : 전공적합성 심사 시 학력, 경력, 연구실적물을 통한 주 연구 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고 반드시 심사 의견을 기술할 것

1. 심사결과

전공영역 적합성	적합성 여부	
	적 합	부적합

2. 심사의견

반드시 종합 심사의견을 기술할 것

[별표 4] <개정 2018.10.23., 2022.10.07.>

일반계열 연구실적심사 기준표

구 분		심사요소	배점	비 고
연구실적물의 양		700점이상	20	
		650점이상 - 700점미만	19	
		600점이상 - 650점미만	18	
		550점이상 - 600점미만	17	
		500점이상 - 550점미만	16	
		450점이상 - 500점미만	15	
		400점이상 - 450점미만	14	
		350점이상 - 400점미만	13	
		300점이상 - 350점미만	12	
		250점이상 - 300점미만	11	
		200점이상 - 250점미만	10	
		150점이상 - 200점미만	9	
		100점이상 - 150점미만	8	
		100점미만	0	
대표 연구실적물의 질적수준	논문(대표실적) 게재 국제저명학술지의 IF(Impact Factor)의 분야별 상위 순위	상위 20% 이내	10	주저자는 해당점수의 100%산정, 공동저자는 해당점수의 20%산정
		상위 20% 초과 ~ 30% 이내	9	
		상위 30% 초과 ~ 40% 이내	8	
		상위 40% 초과 ~ 50% 이내	7	
		상위 50% 초과 ~ 60% 이내	6	
		상위 60% 초과 ~ 70% 이내	5	
		상위 70% 초과 ~ 80% 이내	4	
		상위 80% 초과	3	
	A&HCI 게재논문	7		
	대표 연구실적물의 우수성	A	20	심사의견
		B	17	
		C	14	
		D	11	
E		8		
총 점			50	

[연구실적심사대상 연구실적 인정기준 및 점수산정방법]

1. 연구실적심사 대상 연구실적

- 최근 3년 이내 게재(발표)한 연구실적을 대상으로 함.

(다만, 박사학위논문은 발표년도와 상관없이 대표 연구실적물의 질적수준 심사대상이 됨)

2. 인정 기준

- 박사학위논문
- 국제저명학술지(SSCI, SCI, A&HCI, SCI-E) 게재 논문
- SCOPUS 등재 학술지 게재 논문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게재 논문
- 국제·국내 특허(발명)등록 실적(출원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3. 모든 실적물 평가시 주저자와 공동저자가 구별되지 않는 경우, 공동저자로 간주함.

4. 연구실적물의 양 평가시 인정률 산정법

가. 국제저명학술지(SCI, SSCI, A&HCI, SCI-E)

1) SCI, SSCI, A&HCI, SCI-E <개정 2022.10.07.>

가) 주저자 : $\frac{2}{n+1} \times 300$ 점

나) 공동저자 : $\frac{1}{n+1} \times 300$ 점

2) 삭제 <개정 2022.10.07.>

나. SCOPUS 등재 학술지

가) 주저자 : $\frac{2}{n+1} \times 150$ 점

나) 공동저자 : $\frac{1}{n+1} \times 150$ 점

다.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1) 주저자 : $\frac{2}{n+1} \times 100$ 점

2) 공동저자 : $\frac{1}{n+1} \times 100$ 점

라. 박사학위논문 : 150점

마. 국제특허(발명) : 150점

- 국외 해당 관리기관에 등록된 국제특허(발명) 실적으로서, 공동실적은 발명자 수(n)로 균등 배분함.

- $1/n \times 150$ 점

바. 국내특허(발명) : 70점

- 국내 해당 관리기관에 등록된 국내특허(발명) 실적으로서, 공동실적은 발명자 수(n)로 균등 배분함.

- $1/n \times 70$ 점

사. 국제특허(발명)와 국내특허(발명)의 점수를 합하여 최대 100점까지만 인정함.

아. 각 실적물에 대한 취득점수 산정 시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함.

자.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를 주저자로 인정함.

차. "n"은 저자 수(또는 발명자 수)를 말하며, 저자 수(또는 발명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10명으로 간주함.

카. 연구실적물이 모집전공에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정할 경우에는 해당 연구실적물 점수의 50%만 인정함.

5. 대표 연구실적물의 질적수준 심사

- 대표 연구실적물의 질적수준 심사는 박사학위논문과 1편 이내의 대표실적을 대상으로 함

가. 논문 게재 국제저명학술지(SSCI, SCI, A&HCI, SCI-E)의 IF(Impact Factor)의 분야별 상위 순위

- 논문 게재 국제저명학술지의 IF의 분야별 상위 순위는 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발표된 JCR 기준으로 함.
- A&HCI 등재학술지 게재 대표연구실적물 IF의 분야별 상위 순위 점수는 7점으로 함.
- 논문 게재 국제저명학술지의 IF의 분야별 상위 순위 점수 계산 시,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는 해당점수의 100%로 산정하고, 공동저자는 해당점수의 20%로 산정함.
- 대표 연구실적물이 국제저명학술지 게재 논문이 아닌 경우에는 논문 게재 국제저명학술지의 IF의 분야별 상위 순위 점수는 0점으로 함.

나. 대표 연구실적물의 우수성

대표 연구실적물의 우수성 심사는 박사학위논문과 1편 이내의 대표실적을 대상으로 심사하며, 심사 시 게재지의 권위와 질적수준, 학위수여교의 수준, 경력, 발전가능성, 실적물의 창의성·학문적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괄 심사함. 단 박사학위논문과 대표 연구실적물의 중복여부는 상관없음.

6. 점수산정법

- ① 연구실적물의 양 평가점수는 심사위원의 점수를 합산 평균하여 산출하되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함.
- ② 대표 연구실적물의 질적수준 평가점수는 최고점과 최저점 각 1인을 제외하고 평균하여 산출하되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함.
- ③ 연구실적심사 총점은 상기 ①항과 ②항의 산정법에 의하여 계산한 점수를 합산함.

예 · 체능계열 및 실기분야 연구실적심사 기준표

구 분	심사요소	배점	의 견
연구실적물의 양 (일반계열실적 포함)	창작이나 작품발표 실적과 그 수준이 매우 탁월함	30	심사의견
	창작이나 작품발표 실적과 그 수준이 탁월함	27	
	창작이나 작품발표 실적과 그 수준이 우수함	24	
	창작이나 작품발표 실적과 그 수준이 보통임	21	
	창작이나 작품발표 실적과 그 수준이 다소 부족함	18	
	창작이나 작품발표 실적과 그 수준이 매우 부족함	15	
대표 연구실적물의 질적 수준 (일반계열실적 포함)		20	심사의견
총 점		50	

1. 모집 전공과 관련된 최근 3년 이내 발표(게재)한 연구실적을 대상으로 한다.
2. 연구실적물의 양 평가는 개별적인 실적을 대상으로 심사하지 아니하고 전체 실적물을 대상으로 일괄 평가한다.
3. 대표 연구실적물 질적수준 심사시 개별적인 실적을 대상으로 심사하지 아니하고 대표연구 실적물 전체를 대상으로 일괄 평가한다.
 - 대표 연구실적물 질적수준 심사는 지원자가 지정한 3편 이내의 대표실적물을 대상으로 하며 학위수여교의 수준, 경력, 발전가능성, 실적물의 창의성·예술성·학문적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함.
4. 점수산정법
 - ① 연구실적물의 양 평가점수는 심사위원의 점수를 합산 평균하여 산출하되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함.
 - ② 대표 연구실적물의 질적수준 평가점수는 최고점과 최저점 각 1인을 제외하고 평균하여 산출하되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함.
 - ③ 연구실적심사 총점은 상기 ①항과 ②항의 산정법에 의하여 계산한 점수를 합산함.

[별표 6]

교육능력심사 기준표

평가항목		배점	의견
강의능력	1. 강의준비	40	심사의견
	2. 강의내용		
	3. 강의방법 및 태도		
인성 및 잠재력	1. 인성	10	심사의견
	2. 잠재력		
총 점		50	

1. 점수산정법

- 최고점과 최저점 각 1인을 제외하고 평균하여 산출하되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함.

2. 1점 단위로 점수 부여함.

3. 예·체능계열 등 실기분야는 강의능력에 실무능력을 포함하여 평가함.

[별표 7]

면 접 심 사 조 서				
전공분야				
성 명		생년월일		
학부(과) 심사결과	구 분	취득점	단계별 순위	
	전공적합성 및 연구실적심사			
	교육능력심사			
	종 합			
면접 심사요소 및 판정				
구 분	심사요소			심사의견
심사 내용	인품 및 가치관			우수, 보통, 미흡
	조직발전에 대한 관심과 기여 의지			우수, 보통, 미흡
	자기발전의 잠재력 및 개발 열의			우수, 보통, 미흡
종합평가	탁월	우수	미흡	부적격
종합의견	종합 의견 기술			
				면접위원 : (인)

※ 종합평가 시 판단 기준

심사의견	판 단 기 준
탁월	각 심사요소 평과 결과가 모두 '우수' 로 평가될 경우
우수	각 심사요소 평과 결과에 따라 '우수' 가 2개 이상일 경우
미흡	각 심사요소 평과 결과에 따라 '우수' 가 1개 이하일 경우
부적격	전체 심사요소 중 어느 하나라도 '미흡'으로 평가될 경우

[별표 8]

서 약 서

본인은 영남대학교 0000학년도 0학기 교육중점전임교원 공개채용 심사 위원으로서 영남대학교 교육중점전임교원 공개채용 지침에 의거하여 공정하게 심사함은 물론 전형관리상의 제반 보안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고의 또는 과실로 교원채용 심사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학명 :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영남대학교 총장 귀하